

의안번호	제550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11일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0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11일

발의자 :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조성태,
박병천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1인가구 비중이 36%로 전국평균 34.5%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다인세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비함.
※ 충북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증가 현황: 28.3%('15) → 36.0%('22)
-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증가 추이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에 있어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가구”, “공유주방” 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1인가구 지원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 7조)
-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1인가구 실태조사, 지원 사업 및 시설 운영 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조례안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방”이란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3. 공유주방 등 식생활 공동체 지원
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5. 1인가구의 외로움 예방, 돌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6.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7.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연구·조사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 유지 기능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도모
- 1인가구 범죄로부터의 안전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제공

2. 비용 발생 요인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1인가구 대상 안전시설 환경 구축 지원

3. 관련조문 (안 제9조)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9조제1항제2호)
- 1인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제9조제1항제4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거주하는 1인가구 관계형성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나. 추계 결과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비 : 56,570천원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 : 22,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 및 시군 매칭 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		-	-	-	-	-	-
세 출		886,570	78,570	202,000	202,000	202,000	202,000
1인가구 사회 관계망 조성지원		776,570	56,57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		110,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886,570	78,570	202,000	202,000	202,000	202,000
	세외수입	886,570	78,570	202,000	202,000	202,000	202,000